

# 산업안전보건 점진적인 정착의 새천년

다. 동쪽에서 해가 솟고 서쪽으로 기우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 없으련만 이 지상의 모든 이들은 새해에 그토록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왜일까요?

이름하여 새천년! 이 길고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감히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천년에 바라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바램도 예외에 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옛말이 있듯이 천년이라는 세월도 한해와 한해가 거듭되는 결과일 터이고 새천년에 바라는 산업안전·보건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한해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한해를 외면한 천년이 있을 수 없고 내일을 외면한 오늘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새천년에 바라는 산업안전·보건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며 획기적인 방법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에서입니다.

## 1. 정착되어야 할 산업보건제도

산업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범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일련의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한 이들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죽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어 정착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내용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을 자주 개정한다는 것이 시행중인 법령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되고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이수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의 법령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현장일선에서 근로자와 기업주를 수시로 접하는 민간기관들의 경험과 지식을 법령 마련하는데 참조가 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령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산업보건을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법적 서식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이를 관련 서식은 기억하기 힘들정도로 자주 바뀌었고, 자원낭비를 부추겨 왔다.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각종 서식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식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최소한도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부나 안전공단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분류의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양식이나 분류방법은 제각기 달라서 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필요에 따라 이를 재분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의료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에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윤 임 중

참여하는 기관은 법에 정하여진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8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던 초창기에는 이름하여 지역할당제 다시 말하면 노동부지방사무소의 관할 지역을 근거로 승인 받은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은 할당된 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자 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와 시장경제라는 논리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어느 기관이 특수건강진단지정을 신청하면 당국에서는 제한 없이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수건강기관은 83년에는 24개 기관이었던 것이 99년에는 99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는 건강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일회성 관리가 대부분으로 장기적 추적관찰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제도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건강관리에 큰 결함이므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사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당해 년도로 끝나는 일회성인 것은 특수건강진단 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3.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정책은 처벌위주로 시행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따르고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의 보험률을 높임으로써 기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기업주의 무관심 또는 무지, 알고는 있으나 경제적 또는 기술적 어려움에서 발생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산업보건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4. 질병의 조기진단은 산업보건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인자의 독성이나 질병발생의 양상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을 년 2회 또는 1회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실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년 2회 실시하던 유해인자는 년 1회, 년 1회 실시하던 분야는 2년에 1회 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간의 실시주기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복지사회건설을 목표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근로자 건강관리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법령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어 정착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산업보건사업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연장을 바람직하지 않다.